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연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11 발의연월일: 2024. 6. 28.

발 의 자:이연희·조 국·박지원

김정호 · 허 영 · 민형배

문금주・황 희・송재봉

이정문 · 이광희 · 한민수

박홍배 · 정성호 · 정준호

한준호 • 이춘석 • 김남희

서미화 · 허종식 · 최민희

의원(2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204개의 지자체에서 발행·운영되고 있음.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 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지역 내 소비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 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음.

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·판매·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임의규정에 불과해 2023년과 2024년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 품권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인구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고 신청하면 이를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고자 함(안 제4조 및 제15조).

법률 제 호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인구 및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연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.

제15조제1항 중 "할 수 있다"를 "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 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에 필 요한 재정적 지원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「국가재정법」 제31조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 의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재정지원 신청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.
-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 편성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의 개정
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 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) ①	제4조(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) ①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
	지역의 인구 및 재정 상황 등
	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
	의 협의를 거쳐 연간 지역사랑
	상품권 발행액 목표를 설정할
	<u>수 있다.</u>
<u>④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
제15조(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	제15조(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
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	지원) ①
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	
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	
발행・판매・환전 등 운영에	
필요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	
<u>할 수 있다</u> .	<u>하여야 한다</u> .
<u> <신 설></u>	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
	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발
	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행
	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
	<u>있다.</u>
<u> <신 설></u>	③ 행정안전부장관은 「국가재

<신 설>

②·③ (생 략)

정법」 제31조에 따라 예산요 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 출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 권 관련 재정지원 신청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반 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 하여야 한다.

<u>⑤</u>·<u>⑥</u> (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)